

卷之三

9/60
3605

기 안 용 지

문서번호	법무 181.7 602	전화번호 3071	접수일자
처리기간	제 1 부 시장		시장
작성일자			
기준년한			
로 조 기 관	기획관리관 <i>10월</i> <i>○</i>		
	법무 과장 <i>○</i>		<i>기획과장</i> <i>본부 관리과장</i> <i>○</i>
	법제 계장 <i>○</i>		
기안책임자		조	
정 수 률	각 안 참 조	발 신	<i>총통</i> <i>○</i>
제 목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대책위원회 규정 중 개정		
<p>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양성화주 진위위원회와 무허가건물 대책위원회는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금번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허가건물 양성화주 진위 위원회는 이를 폐지하고 동 기능을 무허가건물 대책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법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p>			
관 점 발 신			

0201-1 - 89

1880-1881 1882-1883 1883-1884

1969. 11. 10. 송인

(서울특별시립 철성 직업보도원 입소)

0409

(4)

호

서울특별시무역가전품대책위원회는 정부·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972 三 九月 一四

서울특별시 장양태



서울특별시 후덕가전물 대책위원회 규정 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대책위원회구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다음에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삽입하고 제4호를 제7호로 한다.

4. 불량건물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5. 기존 무허가건물 정리계획에 관한 사항
 6. 무허가건물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정은 197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0410

조 문 대 비 호

현 행 제 정

제2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찰
한다.

- | | |
|-------------------------------|----------------------------|
| 1.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수립 | 제2조(직무) 짜동 |
| 2. 불량건물 개량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수립 | 1. 짜동 |
| 3. 농지분양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 2. " |
| 4. 기타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 3. " |
| | 4. 불량건물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
| | 5. 기존무허가건물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 | 6. 무허가건물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
| | 7. 기타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

제 정 이 유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양성화주진위원회와 무허가건물대책위원회를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금번 위원회전비개회에 따라 무허가건물양성화주진위원회는 이를
폐지하고 동 기능을 무허가건물대책위원회에 통합 운용 하기 위하여 개정하
고자함.

서울특별시부 이자건축률 양성화추진위원회 규정

1970. 9. 1. 문령 제308호

제1조(목적) 본 이자건축률의 양성화추진에 관한 효율적인 방안을 시장에게 권의 하여 이자이 서울특별시부 이자건축률 양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다.

제2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할한다.

1. 이자건축률 양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2. 불량건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3. 폐지문양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수립

4. 기타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1) 위원장 1인을 두며 도시계획국장이 된다.

(2) 위원은 기획과장, 정부과장, 예산과장, 건축제1과장, 도시계획과장, 사회과장, 농지과장, 모목과장, 학수과장, 금수과장, 성소제2과장이 된다.

제4조(문자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자위원회를 한다.

1. 건물재량문자위원회

2. 폐지문양주택문자위원회

(2) 건물재량문자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제1과장 폐지문양주택위원회 위원장은 관제과장이 된다.

(3) 문자위원회의 예정권은 위원장이 갖는다.

제5조(집행단체) (1) 건물의 재량지도와 재량사업에 관한 사무적인 조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재량집행단을 한다.

(2) 건물재량집행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건축재량과장이 된다.

(3) 전속 재무집행관은 전속 제1기장, 예산제2기장, 도로 기장 및 하수 시설 기장이 된다.

제6조(획득) (1) 획득는 위원장과 본부의 후속 소집한다.

(2) 획득는 계약위원회 또는 판권과 판수의 품식으로 계약하고 출석위원회 또는 판권과 판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전의및보고)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전의하여야 한다.

(2) 본과위원회및 집행관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와서기) (1) 위원회 본과위원회및 집행관이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감사와 서기 약관인을 듣다.

(2) 감사와 서기는 서문부원을 염서 시장이 인정한다.

제9조(시행제작)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식

이 규정은 197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공포안

서울특별시 무역가전률 대책위원회 규정 중 개정 규정을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 8. ,

서울특별시 혼령 제 309 호 70. 9. /

서울특별시 무역가전률 대책위원회 규정 중 개정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직무)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掌 한다.

가·무역가전률의 집단 철거에 관한 사항

~~이주 및~~

나·철거민의 정착 대책에 관한 사항

다·철거민 구호에 관한 사항

라·불법전률 개정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 수립

마·기존 무역가전률 정비 개혁에 관한 사항

바·기타 양성화 업무 및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여 시행한다.

韓書卷之三

元

卷之三

제2조 (진두)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할 한다.

제2조 (직무)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다. 무역 가격률의 짐작률에 따른 사항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돋우는
한국 예술의 전통

나·칠정민의 아주 뒷 정착 대책에 관한 사학

다. 『한국구호』 제1000

한국의 고도의 고급 사학

라. 기타 외원죄의 목록을 작성

마·풀 마풀 가정에 따른 자장 조사연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미니재 수기

마·기준 무학가 문물 정리 제도에 관한 사항

부. 기관 양성화 업무 및 위원회의 모색을
통해 양성화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안)

수신 공보실장

등신 : 법무과장

제목 서보 경재 의뢰

아직은 굳이 서보 경재를 의뢰하오니 이를 경재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후속기 바랍니다.

1. 서보 경재구문 훈령

2. 서보 경재관령 훈령

첨부 : 훈령 2부 1.

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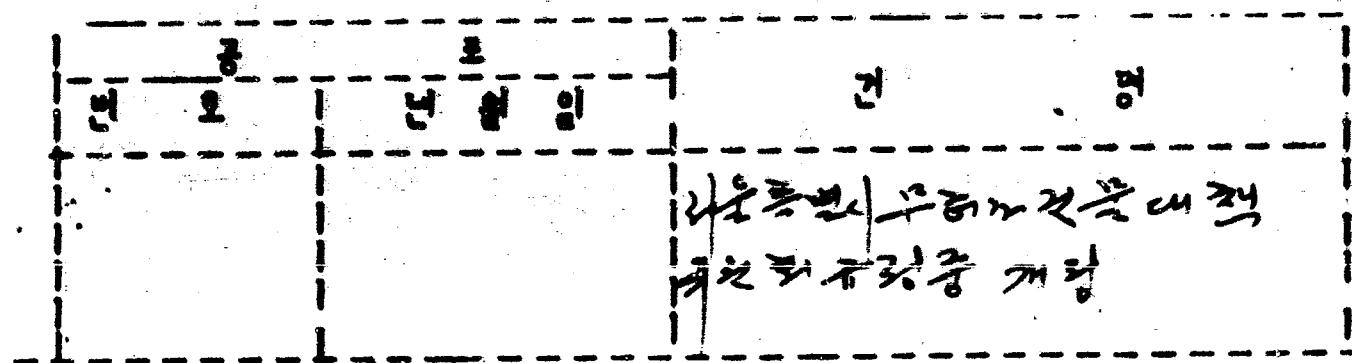
부 을 류 복 시

법부 181.

72.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공포 통지

아예와 같이 공포하였으므로 통지함.



첨부: ~~총령~~ 문 1부 1.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않음)

서 을 류 복 시 장

수신처: 서실 1-4, 서국 1-11, 서과 1-58, 서청 1-9, 서울 1-98,
교동, 전소속 기관

0418

방 장 사 유

서울특별시 투자자 관리를 대상으로 위원회와 양성화 추진 위원회는 투자자 관리를 경리하는 유사한 직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위원회 정비 기관에 따라서 양성화 추진위원회를 떠나 학도로써 서울특별시 투자자 관리를 대상으로 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같이 보통 개정합니다.

○부록 부록가 견적 흔적()부록의 규정

9. 부록의 규정 전문

70.9.1 흔적 제1309호

제1조(목적) 부록 부록가 견적 흔적의 규정과 같은 규정을 설의하여 그 적용과 같은 사항
증언을 시장에게 견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록가 견적 흔적()
부록의 규정()을 한다.

제2조(첨부) 1) 부록의 다음 사용을 관통 한다.

1. 부록가 견적 흔적의 첨부에 관한 사용

2. 첨부의 첨부에 관한 사용

3. 첨부 구조에 관한 사용

4. 기타 부록의 목록을 통장 하기 위하여 관호한 사용

제3조(조항) 1. 부록의 부록은 두피 도서 부록과 같이 한다.

2. 부록은 부록과 중·여전과 중·전자과 중·전·제1·2과 중·사회과 중·

보건과 과 중·전자과 중·은수과 과 중·시설과 중이 같다.

제4조(조증과 관리) 1. 부록의 부록은 부록과 관리하고 그 의증이 같다.

2. 부록은 부록과 관리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부록과 관리의 관리의
한다.

제5조(흔적) 부록의 흔적은 부록과 같은 규정을 시장에게 견의 하기 한다.

제6조(흔적의 사용) 1) 부록의 사용은 부록과 같은 규정을 한다.

2) 흔적은 부록과 같은 규정이 있고 부록과 같은 규정을 부록과 같은 규정이

제7조(부세의) 위원회는 본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한다.

六
四

이 규정은 1970년 8월 1일부로 시행된다.

서울특별시 주민가 건축물 양상과 추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주민가 건축의 양상과 추진에 관한 효율적인 방안을 시장에게 제의하
여야며 서울특별시 주민가 건축물 양상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을 한다.

제22(제2) 이전에는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1. 누가 군을 양성화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목 수립
 2. 품격군을 재정의 관점 조사 및 연구 대목 수립
 3. 대목은 양 대목이 관한 조사 연구 및 대목 수립
 4. 기타 양식과 연관에 관한 사항

제3조(조작) 1) 의뢰하여 외면을 1회로 두되 도시가고를 같이 한다.

2) 위천은 기획과장·법무과장·예산과장·건축 제1과장·도시기획과장
사회과장·녹지과장·도로과장·아수과장·급수과장·청소 제2과장이

제4조(본고의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본장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한다.

9. 그림 속에서의 외로움

2. 관공업 부록 흰과 외원과'

기 관공업 기방문과 외원과 외원장은 관속 제1과장 대지본 양 대책외원과 외원장은 관지 과장이 된다.

기 본과 외원과 대중은 외원장이 흔든다.

제5조(관공 흔 살지) 기 관공의 기방지도와 기방사업에 관한 사무적인 조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공을 관리하는 흔장을 한다.

기 관속 기방 관공관에 관장을 두되 관총은 관속 기방기장이 된다.

기 관속 기방 관공관은 관속 제1기장. 제2기장. 도로 기장 및 약수시설
기장이 된다.

제6조(회의) 기 회의는 외원장과 관장이 주체로 소집한다.

기 회의는 관리의원 또는 관원과 관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또는
관원과 관수의 관장으로 결정한다.

제7조(관의 흔 보고) 기 외원과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관의하여 흔한다.

기 본과 외원과 및 관공관에서 결정된 사항은 외원장에게 보고하여 흔한다.

제8조(관사와 서기) 기 외원과 관과외원과 및 관공관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사와 서기 직원을 흔다.

제9조(사행세칙) 외원과 흔영예관하여 관으로한 사항은 외원과의 의결을 거쳐
외원장이 정한다.